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13호

2020. 9. 2.

건 명	논산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김진호 의원 외 4명	제안연월일	2020. 8. 25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8. 25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O 논산시 농업 환경의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□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O 면허취득 교육비의 지원(안 제3조)
- O 교육비 지원대상(안 제4조)
- 교육 방법(안제 5조)
- O 교육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□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법 제22조,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,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,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,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